

트 모더니즘, 신자유주의 등의 사조가 확산되고 언론의 위치는 인간관과 사회관에 따른 변환의 변혁기로 진입하고 있다.

(3) 과거 우리 사회에 도착화해 온 심성 활동 중심의 언론관을 계승하여 한국적 토양을 고려한 재평가와 서양적 언론관의 비판적 접합이 필요하다. 한국적 언론관이 인간 중심 도야에 역점을 둔 점과 서양 사회 속에서의 수평적 자유를 배경으로 한 언론관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착화되어온 한국 사회의 언론관은 언어 문자를 통한 의사 표현이며 인간 도야의 한 과정을 논하는 행위이다. 서양이 공동체적 토론과 다수에 의한 공동성 구축에 언론(speech)이 중요 축을 이룬다면 동양의 고전적 전통은 언어의 절제와 철학적 탐구에 언론의 본질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자를 결합하면 동양의 개성적 인격 수양과 서양의 사회적 공동성의 결합으로 언론이 보다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4) 디지털 공학기술과 지식 정보화는 전혀 새로운 언론 생태가 아니라 공학기술개발에 의한 변용상(變容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적합한 언론관 설정과 필요한 제도적 규제 장치 확립이 필요하다.

V. 윤리 규제 제도 운용과 대안

○ 윤리 규제 제도 비판

언론이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체성(體性)과 활동은 사회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정향과 합목적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계약 형태로 규제(regulation)가 따른다. 규제는 철학적 타산이 개재된 윤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공중의 이해 관계에 맞추어 절제와 제약이 가해지게 된다.

한국 사회의 신문과 방송 등의 대중매체가 제도적으로 정착해온 과정을 보면 사회적 목적을 실천하는 정의와 정치적 경제적 이해 타산에 빠진 타락을 진폭으로 하는 장구한 몸부림이 있어왔다.

이러한 과정에 윤리의 형성과 규제의 제도화가 초래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한국의 대중매체는 오랜 기간동안 정부 주도 규제 중심으로 유지되어 자율성을 갖춘 분산 규제 체제가 육성되지 못했다. 언론으로서의 대중매체의 위치는 국민, 국가, 언론의 관계가 아니라 정치 권력과 대중매체의 함수 관계로 되어 언론의 규제가 오랜 기간동안 대중매체 중심으로 행정부 중심 통제여서 국민과의 거리감을 단축시키는데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한국 근대 대중매체 성립 100년을 되돌아보면 대중매체는 언론의 자격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모든 규제가 정부로부터 독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편집 편성 등의 표현 활동 독립과 자립 규제 체제 확립이 가장 핵심이 된다. 경영 규제 및 경제 규제는 사회의 경제 활동 규제 체제에 맞춘 질서가 정립되어야 한다.

국민이 공중으로서 가지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 현상을 대중매체의 표현 활동과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체계화하는데 한계를 드러내었다. 표현자 중심이어서 수용자 중심 시대에 적합한 체질 마련하는데 소극적이어서 시민의 자유 의식이 활성화되는데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대중매체 스스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2) 대중 매체 스스로 자주성의 함양과 자주적 규제 제도 육성에 소극적이었다. 대중매체는 언론 측면(편집 또는 편성)과 산업 측면의 이원성을 내재하기 마련이며 양자의 균형 있는 체질 육성이 필요했다. 21세기 대중매체가 갖추어야 할 체질 역시 언론과 산업의 이원성이다. 그러나 언론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산업 측면의 질서 확립에 소극적이던 것이 우리 신문과 방송의 취약성이다. 이러한 체질은 자체 내부의 조직 활성화와 협회의 활동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와야 했었다.

대중 매체는 이원적 자주 규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기간행물사나 방송사의 내부 심의실 또는 옴부즈맨 제도 확립에 의한 공공성 제고의 영역이다. 둘째는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인 신문협회나 방송협회 등이 사업자로서의 자주 규제 체제를 활성화했으나 대단히 지체되었다. 편집 규제, 경영 규제(산업 규제) 및 직업 윤리 규제는 사업자 중심의 제도화가 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사업자 외적 정부 규제를 받아가면서도 자주적 규제 체제는 강화하지 못했다. 5.16이후의 통폐합조치,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제정에 대한 대응, 언론통폐합과 언론 기본법 시행, 김영삼 정권의 세무 조사 등 우리의 대중 매체는 거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부의 통제를 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높이는 자율적 규제 장치의 확립에는 너무나 미흡했다.

(3)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는 언론이다>라는 언론에 대한 한국적 등식이 굳어지면서 신문이나 방송 규제는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치외 법권을 공인 받아 누리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80년 언론통폐합 조치이후 대중매체 중심의 언론관 축소 변환은 한편으로는 탄압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는 찬체제적 경영주 신문사 방송사에게는 특권을 주는 결과를 가져와 경영의 치외 법권화를 조장시켰다. 이미 뿌리내려온 계몽주의 체질과 함께 엘리트 의식의 팽배로 대중 속에 있어야 할 대중매체가 대중을 조작하고 대중 위에 군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중은 점차 각성하고 대중매체의 권력 매체화 하는 체질을 감지할 수 있는 각성이 확대되면서 대중매체를 불신하고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오묘한 거리감이 형성되었다. 지식정보화는 대중매체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앞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대중매체가 사회의 실상을 뒤따라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 대중이 공중으로 향유하는 언론과 대중매체가 민의를 수렴하는데 갖추어야 할 공변수적 인식과 체질이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4) 사업자 중심의 연수와 연구 개발 체제가 미흡했다. 신문 방송 업무에 참여하는 신문인 방송인은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화되어 있는 점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절대 다수의 대중매체가 사회 변환에 따른 연수와 연구 체제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사회문화의 변환과 그 체감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 있다. 한국 사회에 적합한 언론 철학이 무엇인가 부단히 탐구하는 노력과 연구가 뒷받침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저변에는 서구 지향적 언론관에 대한 환상과 지엽적 모방이 이상적인 실천으로 오해된 점도 작용하고 있었다.

(5) 대중매체의 학문적 연구 풍토가 짧기 때문에 대중매체 현안 해결에 원만한 뒷받침이 될 만큼 다양하고 충분한 이론적 토대가 확립되지 못했다. 언론 학문 연구 풍토 역시 서양지향적이며

한국적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는 소극적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연구의 풍토는 서양의 제도를 일부 그대로 도입하여 한국 사회 대중매체 현안에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 것으로 오해되었다. 이러한 학문 풍토는 규제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면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6) 소비자 감시가 미흡했다. 대중매체가 오랜 기간동안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경영 여건을 투명하게 드러 내놓지 않고도 사회 정의를 갈파하면서 유지될 수 있었던 점은 사업자 상호간에 견제와 올바른 경쟁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를 묵과한 소비자인 공중의 책임도 크다. 이제 신문과 방송은 언론이면서도 상품이다.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그 경영이 부실할 때는 사회적 조치가 있어야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대중매체 지난날을 돌아보면 대중매체는 선택된 권력화 하여 소비자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처신해왔고 소비자 역시 이를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는 깨어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 매체가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면 될수록 소비자의 감시 규제 장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새 윤리 규제 방안 : 다원적 분산 규제 모델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지속성을 선택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철학 또는 이념을 모색해야 하는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만큼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사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제도적 정착도 수반되어야 한다.

더욱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로 진입을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합의의 도출을 위한 여론의 형성과 반영에 언론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 언론은 대중매체 중심의 언론 뿐 아니라 확대된 언론 언론까지를 말한다. 새로운 사조와 삶의 철학을 주도하는 각성과 함께 공중의 저변에서부터 현현하는 현상까지 원만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정보의 접근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 생태의 변환에 따른 능동적이며 자주적 체질을 갖추어 높은 자율성을 발휘하는 언론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언론 윤리의 본질이 되며 이를 위한 규제 장치가 탄력적으로 운용될 때 드디어 바람직한 것이 된다.

한국의 언론이 21세기에 맞는 언론으로 정착하기 위한 규제 제도의 착상에 우선 해결되어야 할 윤리적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언론관의 새로운 설정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 언론관은 공중의 자유 언론(free speech)을 기반으로 하여 신문, 방송, 통신 등의 대중 매체 중심 대중 언론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인식을 다시 확대하여 디지털과 사이버 시대에 맞게 확대하는 안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신문 방송 등 매체의 표현 양식에 집중하는 언론관으로서는 앞으로의 언론 영역 설정과 이에 따른 규제 장치 확립이 대단히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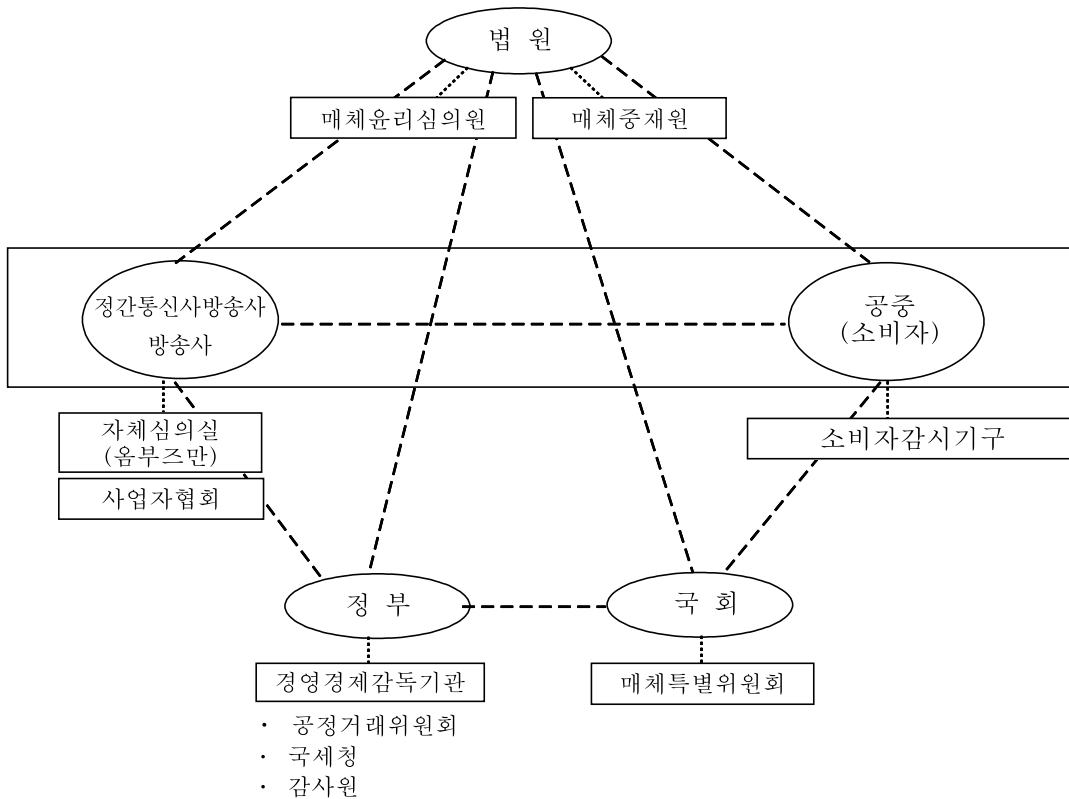
둘째는 스스로 규제 체제를 강화하여 지난날의 규제 관행에서 취약성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규제 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신문 방송 등이 자사 또는 협회를 중심으로 스스로 각성하고 그 보완책을 찾는 자주성과 책임의 강조이다.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스스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양보와 희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자체 연수로부터 직업 윤리 편집 윤리 경영 윤리가 심도 있게 자주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는 바야흐로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산업화의 경우처럼 디지털과 지식 정보화로 새로운 시

대의 도래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생태적 이해와 적합한 규제 안목을 설정해야 한다. 지식 정보화나 디지털은 사회의 일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대중 매체 표현 현상을 보면 이러한 지식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편향적이며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한 이해의 폭 확대가 필요하다.

윤리적 규제를 구성하는 핵심은 표현성(편성 편집윤리, 언론윤리), 산업성(경제윤리), 직업성(전문 직업 윤리), 공학기술성(기술의 사회적 효용 윤리), 경영성(전문 조직 관리 윤리), 수용성(수용자 보호) 등이다. 이들은 특정 기관이 중심이 되어 규제하는 기존의 행정 규제 방식으로는 부적합하며 다각적으로 분산되어 견제와 균형을 갖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이미 <텔레비전 생태와 규제 제도>라는 논문에서 착안한 <다원적 분산 규제 모델>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언론 규제 모델을 작성한다. 다원적 분산 규제 모델은 (1) 표현자 자주 규제로서의 자체규제와 사업자 중심 협회 규제, (2) 표현 규제로서의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매체윤리심의회와 매체중재원(현재 언론중재위원회), (3) 행정부의 경제 경영적 측면의 규제, (4) 수용자 규제와 수용자 보호, (5) 미디어 총괄 규제의 입법화를 전담하는 국회의 특별 위원회 등으로 분산하여 규제 제도 개선책을 고안한 것이다.



○ 언론중재위원회(매체중재원)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기본법 제정 이후 거대한 대중매체의 조직적 표현 활동에 대한 개인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기여해왔고 대단히 설득력을 얻어 왔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운용 과정에서의 모호한 부분과 시대 변화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보호(protection)의 논리 수용

언론중재위원회의 제도적 근거는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이 핵심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문화적 생태 여건과 매체의 변혁 여건을 고려할 때 개념과 법적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재의 근거는 방송법(2000, 1. 12제정) 제6장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 법률(1999. 2. 8.개정) 3장 침해에 대한 구제에 근거하고 있다.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 매체 다원화와 함께 대중매체가 언론의 기능과 문화산업의 기능의 확대 구도를 고려하면 “보호(protection)”의 논리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침해(harm)의 원리를 전개하고 있다. 침해에 의한 피해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보호까지 제도화하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 것이다.

(2) 반론보도청구권의 다른 시각의 해석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1항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

해를 받은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그 <사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 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문맥상 사실적 주장은 사실 보도이며 무엇을 “보도”로 볼 것인가는 의미의 범주가 모호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사실의 표현”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정기간행물법 중,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전적인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본다면 16조와 18조의 “언론사”란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비약적이며 모호한 어휘임에 틀림없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조에서도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언론사”로 규정하는 것은 임의로 개념을 도입하여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다. 언론의 본질을 축소시킬 위험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간행물사 또는 정간사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적 주장> 또는 <사실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반론보도의 기회는 피해의 구체 측면에서의 해석보다는 개인이 사회에서 공중의 자격으로 가지는 언론 자유의 행사로 해석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표현 행위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언론의 기회를 놓친 당사자에게 주는 평등한 언론 기회로 해석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정기간행물사나 방송사만이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은 누구나 언론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이다.

취재 기자나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보면 공중으로서의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언론에 가장 성실하고 균형 있게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중매체의 직업 윤리이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한 쪽편만 집중하여 형평성을 잃은 표현을 한 나머지 다른 한편의 입장은 배제해버린 점에서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

제 17조에서 규정한 <언론 보도> 개념 역시 공중이 가지는 언론의 자유 개념과 연관지어 보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간물의 표현”과 “방송의 표현”이라는 말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될 경우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규정한 “표현”과도 확대 연관된 해석이 가능하다. 언론의 범주와 보도의 범주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텔레비전에서 코미디, 드라마, 대담의 경우에도 중재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이들은 보도로 볼 수 없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확대한다면 중상 모략이나 개인의 인권 침해는 민법상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 헌법 21조에 규정한 언론은 공중으로서의 개인이 행하는 언론(speech)과 대중매체의 표현행위로 포괄적인 해석을 내림이 바람직한 것으로 유추된다. 정정보도청구는 단순한 민사상의 피해가 아니라 공중 차원에서 이루어진 언론 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3) 시정권고의 새 해석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정간사나 방송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근거를 담고 있다. 윤리는 사회가 지향하는 도덕적 가치의 보편성과 이상이며 상대성을 내재하기 마련이다. 시정 권고는 절대 기준을 내세운 완성형의 윤리를 전제한 오류를 지적하는 의미를 다분히 내재한다. 권위주의 사회일수록 이러한 입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의 다원화 입장에서 본다면 정간사나 방송사의 표현 활동의 비윤리성 심의와 지적은 <시정 권고>라는 개념보다는 <표현 윤리 권고>가 더 인격적 의미를 가지

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윤리적 요인의 수정과 개선에 필요한 윤리적 준수 권고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물론 정간사나 방송사 역시 하나의 집단 인격체이고 스스로 개별 직장이나 협회에서 윤리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참여는 체제를 갖추도록 자주 심의 체제가 지금까지 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입장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선행 과제이다. 방송에 비하면 신문은 보다 느슨한 자주 윤리 규제 체제로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4) 공권역(public sphere)에 대한 새로운 법적 근거 검토

디지털 기술이 기존 정보 체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콘텐츠의 상당한 부분이 컴퓨터 단말기로 판독이 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디지털 기술 개발 추세를 보면 텔레비전 모니터는 방송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여 접하는 정보 단말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서는 방송, 통신, 신문, 잡지, 영화, 비디오의 영역이 상당히 와해되어 매체의 언론 기능과 표현 기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신문, 방송 등의 구획화된 고전적 입장으로 남아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여 매체를 중심으로 한 공권역의 재설정과 이에 따른 규제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재의 확대 해석과 필요한 근거의 확립이 필요하다.

(5) 방송 통신 관계 규제

방송법은 산업 사회의 아날로그 시대의 취약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지식 정보화에 적합한 법적 근거와 규제 장치가 전혀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관계 설정과 함께 언론과 산업의 성격 규정에 따른 규제도 문제이다. 이러한 규제 체제의 전환에 따라 중재 활동 역시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

방송법에 준용하고 있는 편성의 근거는 낙후된 규제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법이다. 2000년 1월 제정한 한국 방송법은 디지털과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방송법이 되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편성 중심으로 내용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언론 중재위원회의 기초 근거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송제도가 잘 정착되어 가는 공업선진국의 경우 방송법은 대개 편성이 아닌 편집 중심의 법적 근거에다 산업(industry), 시장(market), 경쟁(competition)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표현행위는 언론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근거의 한국적 혼돈은 방송정책 입안자나 방송관계자들의 이해의 확대가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편집 근거와 방송 규제 기능의 독립성 보장이 확대된다면 중재와 심의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송법은 아직도 표현하는 내용 중심의 편성 규제이고 방송의 개념 자체가 편성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 반면에 방송의 제도 개발에 앞선 공업선진국에서는 방송을 편성보다는 편집 중심으로 자주 규제 내지 공공 규제하며 산업적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6) 언론 중재의 성격 보완

언론 개념의 포괄적 확대 해석과 함께 개인의 인권 침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재 기능을 확대 해석하고 확대도 필요하다. 대중매체가 특정 개인이 아닌 절대 다수의 공중에게 입히는 피해의 경우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 감독하고 규제할 근거가 거의 없다. 신문, 방송, 통신 등의 대중매체는 앞으로 갈수록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성립될 것이며 이에 따른 중재 역시 공공의 이익을 보호 배려하는 체제로 확립되어 가야 할 것이다.

신문과 방송 편집의 자주적 심의 체제 육성 권장과 병행하여 중재의 위상이 설정되어야 하며 필자의 견해로는 대중매체의 사실 보도 중심의 언론 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매체 표현 실상에 부합하는 제반 표현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매체윤리심의원과 매체중재원의 기능은 앞으로 보다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앞의 도표 참조). 방송위원회가 정부 기관화하면서 심의 기능은 분리하여 매체윤리심의원이 독립 공동기관으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익에 반하는 다양한 매체의 사법적 규제 문제를 어떻게 보다 총괄적으로 체계화해야 할 것인가에 양자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VI.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언론관의 설정과 함께 언론이 가져야 할 윤리성에 상응하는 규제 체도를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언론에 근대적 언론의 비판적 수용과 함께 새롭게 형성되는 사이버 시대의 공론장의 가능성을 동시에 배려하자는 의도이다. 이러한 구도에 대한 윤리적 규제 양식은 복합적 측면을 내재하게 되는데 이를 사회문화적 여건에 맞게 분산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열린 사회의 구축과 보다 원만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한국 사회는 개항이후 약 100년이라는 세월동안 산업화의 실험장이 되어 왔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서양식 근대화의 과정에 토착적 전통의 상당한 단절과 서구적 산업사회 제도 문화의 비판 없는 수용이 대량으로 이루어져 역사적 실험장이 되기도 했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은 전통의 재건과 산업화의 한국적 정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학기술적으로는 디지털과 사회적으로는 지식 정보화라는 새로운 변혁의 순환기 초기로 진입하고 있다. 지식 정보화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기술은 기존 매체문화의 질서에 본질적인 혁명을 예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제도적 질서 모색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개화기 이후 서구적 철학과 사상을 수용하고 새로운 제도문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근대화라는 생태적 풍토를 배경으로 한국의 근대 언론상은 정립되어 왔다. 그러나 그 언론이 토착적 동질성의 전승과 외래적 전통을 규합하려는 과정에 정치적 사회문화적 질곡의 시대가 있어 왔고 오늘날에는 축소지향적 규모로 언론이 규정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인간 중심의 고전적 언론의 전통이 희석된 것과 아울러 헌법에 규정한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와 실제 실용화되고 있는 언론상은 상당한 거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신문 방송의 자유처럼 축소 해석되어 버리는 사례도 빈번하게 직면하게 된다. 대중매체=언론이라는 등식으로 사회적 인식이 굳어져 가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한국 언론은 대중매체 중심의 표현 현상 뿐 아니라 공중의 자유 표현(free expression)이나 언론 문언론(free speech)을 포함한 포괄적인 영역이 되어야 함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축소 인식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화가 진행되어 특정 매체를 중심으로 언론이 논의되고 편착된 형국으로 되고 있다. 대중매체의 현상을 중심으로 언론을 설정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언문 언론을 등한시 해버린 경향이 있고 이러한 발상은 한국의 언론 규제 제도의 정립에도 문제가 된다.

구어 중심의 언문 언론을 기반으로 하고 그러한 철학적 토대 위에 대중매체 또는 인터넷 공론까지 언론의 영역으로 설정함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가장 원형이 되며 개인이 향유하는 freedom of speech와 mass media의 상호 관계에 대한 원만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기인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미흡한 점도 원